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91
----------	-------

제안일자 : 2018. 09. 10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수정이유

- 관련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임의관리대상 건축물”로 명명하고, 이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 “임의관리대상 건축물”로 명명하고(안 제49조제2항),
- 이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함(부칙)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9조제1항 중 “시장 또는 구청장”을 “시장·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법에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u>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u></p> <table border="1" data-bbox="600 495 999 1048"> <thead> <tr> <th>등급</th> <th>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우수</td> <td>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td> </tr> <tr> <td>양호</td> <td>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td> </tr> <tr> <td>보통</td> <td>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td> </tr> <tr> <td>미흡</td> <td>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td> </tr> <tr> <td>불량</td> <td>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 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필요</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건축안전센터가 설립되어 업무수행이 가능한 때부터 시행한다.</u></p>	등급	기 준	우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호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통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 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필요	<p>----- ----- -----.</p> <table border="1" data-bbox="1023 495 1414 1048"> <thead> <tr> <th>등급</th> <th>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우수</td> <td>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td> </tr> <tr> <td>양호</td> <td>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td> </tr> <tr> <td>보통</td> <td>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td> </tr> <tr> <td>미흡</td> <td>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td> </tr> <tr> <td>불량</td> <td>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 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필요</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p>	등급	기 준	우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호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통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 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필요
등급	기 준																									
우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호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통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 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필요																									
등급	기 준																									
우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호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통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 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필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구청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진·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건축안전센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다음 표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등급	기 준
우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호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통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 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필요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진·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구청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진·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건축안전센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다음 표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p>

등급	기 준
우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호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통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 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필요